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57
----------	-------

발의연월일 : 2026. 6. 15.

발 의 자 : 허 영 · 안태준 · 김승원  
박 정 · 이해식 · 박상혁  
박용갑 · 한민수 · 진성준  
서삼석 · 소병훈 · 문진석  
김영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별표에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관할 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미등록 국제결혼중개업소 등이 증가하여 문제가 되고 있고, 이와 같은 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가 확산되어 고객들이 미등록 및 불법 업체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이러한 불법 영업을 신고한 자를 적극적으로 보상 및 보호할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미등록·불법 결혼중개업체 등을 신고한 자가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고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제26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의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